

구민센터(홀)의 신청·이용방법 변경에 대해서

내용 오사카시 구청부설회관 조례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인해 구민센터(홀)의 문의·이용방법이 바뀝니다.

변경된 점 지금까지는, 이용하기 직전(당일포함)까지 사용료를 지불하였지만, 오사카시의 규칙개정으로 인해, 2017년 4월1일 이후에는, 원칙적으로 구민센터(홀)의 사용료를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에 지불하게 됩니다.

| 신청일과 이용일의 기간 | 지불방법 | 구체적인 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신청일로부터 이용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상일 경우 |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의 지불 | ① |
| 신청일로부터 이용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, 1개월미만일 경우 | 신청일로부터 1주이내의 지불 | ② |
| 신청일로부터 이용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내일 경우 | 이용일까지의 지불 | ③ |

※부속설비사용료는 이용하는날 지불해 주십시오.

사용료의 환불 이용자가 다음기간내에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, 지불한 사용료를 환불합니다.

| 이용실명 |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날 | 환불하는 사용료 액수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홀 | 사용날의 3개월전의 날 이전의 날 | 전액 |
| | 사용날의 3개월미만으로 2개월전의 날 이전의 날 | 반액 |
| 회의실 | 사용날의 1개월전의 날 이전의 날 | 전액 |

구체적인 예 예①) 신청일이 4월10일이고, 이용일이 8월20일인 경우

| | | | | | |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신청일(4/10) | 신청으로부터 2주이내 | 이용일3개월전(5/20) | 이용일2개월전(6/20) | 이용일1개월전(7/20) | 이용일(8/20) |
| 홀 | 지불기간 | 전액환불기간 | 반액환불기간 | 환불이 없는 기간 | | 환불이 없는 기간 |
| 회의실 | | | 전액환불기간 | | | |

예②) 신청일이 4월10일이고, 이용일이 5월1일인 경우

| | | |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| 신청일(4/10) | 1주이내(4/16) | 이용일(5/1) |
| 전실 | 지불기간 | 환불이 없는 기간 | |

※지불후의 환불은 안됩니다.

예③) 신청일이 4월10일이고, 이용일이 4월16일인 경우

| | |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| 신청일(4/10) | 이용일(4/16) |
| 전실 | 이용날까지의 지불 | |

※지불후의 환불은 안됩니다.